

# 학생회회칙

제정 : 1985. 4. 3  
개정 : 2014. 3. 1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학교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22>

**제3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② 휴학 또는 정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활동에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구)** 본회의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와 심의·의결기구인 대의원회 그리고 학과별로 학술 및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학회를 둔다.<개정 2008.9.18, 2011.8.22>

**제5조의2(겸직금지)** 집행위원회 위원, 대의원회 위원, 학회장, 부학회장, 학보사 기자 및 방송국 국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11.8.22>

**제6조(지도위원회)** ① 학생회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신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5.3.1, 2005.6.7>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입학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위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개정 2005.3.1, 2005.6.7., 2006.11.21., 2014.3.1>

**제7조(효력정지)** <2003. 9. 1부 삭제>

**제8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기술봉사활동
4.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

## 제2장 집행기구

### 제1절 학생회장

**제9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10조(임기)** 임기는 2월 1일부터 익년(翌年) 1월말까지로 한다.

**제11조(자격)**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2. 전체(全體)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개정 2012.2.21>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집행위원회 위원, 대의원회 위원, 학회장, 부학회장, 학보사 기자 및 방송국 국원은 해당 직을 선거일전 30일까지 사퇴한 자<개정 2011.8.22>
5. 2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등록을 필(畢)한 자에 한하며, 3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 등록을 필(畢)한 자

**제12조(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규약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거규약은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1, 2005.6.7>

**제13조(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위원회 각 부서의 장을 입학학생처장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개정 2011.8.22., 2014.3.1>
2. 회장은 각 부서의 장을 지휘 통솔한다.
3. 회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4.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6. 회장은 매 학기말 학생회비 결산을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7. 기타 회장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有故)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8.22>

② 회장 대행은 주간부회장, 야간부회장 순으로 수행한다.<신설 2011.8.22>

## 제2절 집행부

**제15조(부서)** ① 학생회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산하(傘下)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문화부
3. 복지부
4. 체육부
5. 홍보부
6. 여학생부
7. 기획부
8. 동아리부<신설 2011.8.22>

② 각 부서에 부장 1인을 둔다.<개정 2008.9.18, 2011.8.22>

**제16조(업무)**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본 회의 서무, 회계 및 각종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2. 문화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복지부 : 학생복지에 대한 사항 및 학생들의 권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체육부 :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부 : 본 회의 대외교류 및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여학생부 :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기획부 : 본 회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동아리부 : 일반 동아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11.8.22>

### 제3절 집행위원회

**제17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8조(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1인, 부회장 2인, 각 부서장 8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9.18, 2011.8.22>

**제19조(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비 산정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3. 학생회비 제반 사업을 검토·조정하며,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4.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소집)** ① 정기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회장이 결정하여 소집한다.

② 임시 집행위원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회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의결)**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심의 및 의결기구

### 제1절 대의원회 의장

**제22조(지위)**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8.9.18, 2011.8.22>

**제23조(임기)** 임기는 2월 1일부터 익년(翌年) 1월말까지로 한다.

**제24조(자격)**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전체(全體)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개정 2012.2.21>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집행위원회 위원, 대의원회 위원, 학회장, 부학회장, 학보사 기자 및 방송국 국원은 해당 직을 선거일전 30일까지 사퇴한 자<개정 2011.8.22>
5. 2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등록을 필(畢)한 자에 한하며, 3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 등록을 필(畢)한 자

**제25조(선출)** 의장 및 부의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규약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거규약은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1, 2005.6.7>

**제26조(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18>

1. 대의원회 간사 및 위원을 입학학생처장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개정 2011.8.22., 2014.3.1>

2. 대의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3.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대의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5. 기타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개정 2014.3.1.>
6. 의장은 대의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회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11.8.22., 개정 2014.3.1.>

**제27조(부의장)** 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有故)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8.22>

② 의장 대행은 주간부의장, 야간부의장 순으로 수행한다.<신설 2011.8.22>

**제28조(간사)** 간사는 의장 및 부의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및 필요한 문서를 작성 보관한다.

## 제2절 대 의 원 회

**제29조(지위)** 대의원회는 본 회(會)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제30조(구성)** 대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간사 1인 및 위원 7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9.18, 2011.8.22>

**제31조(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18>

1. 학생회비 승인
2. 학생자치기구 사업계획안의 심의 및 예·결산의 승인과 감사<개정 2011.8.22>
3.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개정 2011.8.22>
4. 학생회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갖는다.
5. 집행부 회장단 및 각 부서의 장, 학회장, 학보사 편집국장, 방송국 방송국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8.22>
6.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결 동의를 구한다.
7.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감사회칙에 의해 학생자치기구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회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행한다.

**제3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와 말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在籍) 대의원 4인 이상, 학생회장이 제19조 2항에 의한 요구가 있을 시와 의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1.8.22>

③ 대의원회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의결)**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1조 제4호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결기한)**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제반 안전에 대하여 상정일시(日時)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상 임 위 원 회** <2011.8.22.부 삭제>

- 제35조(지위)** <2011.8.22부 삭제>
- 제36조(구성)** <2011.8.22부 삭제>
- 제37조(업무 및 권한)** <2011.8.22부 삭제>
- 제38조(소집)** <2011.8.22부 삭제>
- 제39조(의결)** <2011.8.22부 삭제>
- 제40조(금지사항)** <2011.8.22부 삭제>

**제4장 학과 학회** <개정 2008.9.18., 2011.8.22>

**제40조의1(구성)** ① 학과 학회는 당해 학과 전체 학생으로 구성하며, 주·야간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08.9.18, 2011.8.22>

② 학과 학회에는 학회장 1인 및 주·야간부학회장 각 1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야간이 없는 학과는 학회장 1인 및 부학회장 1인 등 2인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8.22>

**제40조의2(학회장)** 학회장은 당해 학과 학생을 대표한다.<개정 2008.9.18, 2011.8.22>

제40조의 3 (부학회장) ②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有故)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8.22>

② 학회장 대행은 주간부학회장, 야간부학회장 순으로 수행한다.<신설 2011.8.22>

**제40조의4(자격)** 학회장 및 부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해당학기 등록을 필(畢)하고 전(全)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인 자<개정 2011.8.22>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집행위원회 위원, 대의원회 위원, 학보사 기자 및 방송국 국원은 해당 직을 선거일전 30일까지 사퇴한 자<개정 2011.8.22>

**제40조의5(선출)** 2년제 학과는 2학년에서 학(부)회장을 선출하고, 3년제 학과의 학회장은 3학년에서, 부학회장은 2학년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9.18, 2011.8.22>

**제40조의6(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8.22>

1. 당해 학회의 학술 및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2. 행사비 산정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행사비 제반 사업을 검토·조정하며,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제40조의7(행사비)** ① 행사비는 다음 각호 이외에는 징수 할 수 없다.<신설 2011.8.22>

1. 원점체육대회
2. 원점문화축제
3. 입학학생처장이 승인한 사항 <개정 2014.3.1.>

② 행사비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학생처장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3.1.>

③ 정수한 행사비는 행사 종류 후 정산하여 입학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제5장 재 정**<개정 2011.8.22.>

**제41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42조(재정관리)** 본 회의 회비는 등록 시 납부하며, 회비 출납 및 보관은 사무처 재무팀에 위임하고, 인출 및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학생회장, 대의원회는 대의원 의장의 결재 후 입학학생처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개정 2005.3.1, 2006.11.21, 2008.9.18., 2011.8.22., 2014.3.1>

**제42조의2(예산)** ① 학생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에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1.8.22>

② 학생회장은 각 부서 및 대의원회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7일 이전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8.22>

③ 대의원회는 상정된 예산서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8.22>

④ 학생회장은 부결된 예산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예산을 조정하여 대의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8.22>

**제43조의3(예산편성)**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11.8.22>

1. 체육대회 등 학생 체육행사 사업
2. 축제 등 학생 문화행사 사업
3. 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4.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5. 학생간부 리더쉽 향상 사업
6. 학생자치기구 환경개선 사업
7. 학생자치기구 홍보활동 사업
8. 학생자치기구 선거 지원 사업
9. 기타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3조(결산)** ① 학생회장은 12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상정된 결산서를 10일 이내에 심의·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8.22>

**제44조(추가경정 예산)** ①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변경을 요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10일 이내에 심의·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8.22>

**제4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 학년도 3월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장 동아리연합회**<2011.8.22부 삭제>

**제1절 동아리연합회장** <신설 2008.9.18, 2011.8.22부 삭제>

- 제46조(지위) <2011.8.22부 삭제>
- 제47조(임기) <2011.8.22부 삭제>
- 제48조(자격) <2011.8.22부 삭제>
- 제49조(선출) <2011.8.22부 삭제>
- 제50조(업무 및 권한) <2011.8.22부 삭제>
- 제51조(부회장) <2011.8.22부 삭제>

**제2절 동아리연합회** <신설 2008.9.18, 2011.8.22.부 삭제>

- 제52조(지위) <2011.8.22부 삭제>
- 제53조(구성) <2011.8.22부 삭제>
- 제54조(운영 및 기능) <2011.8.22부 삭제>
- 제55조(부서) <2011.8.22부 삭제>
- 제56조(업무) <2011.8.22부 삭제>
- 제57조(연합회규정) <2011.8.22부 삭제>

**부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198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회 부활준비위원회) 학생회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1985년 3월 22일자로 구성된 학생회 부활준비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본 회칙이 통과된 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이를 해체한다.
3. (최초의 선거) ① 최초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중 20명을 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있는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최초의 선거방법은 학생회 선거규약에 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공고한다.  
 ④ 대의원중에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직을 사퇴한 후 입후보 할 수 있다.
4. (개정) 본 개정회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본 개정회칙은 199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본 개정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본 개정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 본 개정회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 본 개정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개정) 본 개정회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1>

1.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6년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8>

1.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22>

1.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1>

1.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